

2.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·운영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제3항(2000. 1. 28. 개정)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방안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한 내수면 어업 조정·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 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파주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함. (안 제1조)
-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, 내수면어업인 대표, 내수면어업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. (안 제2조)
-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. (안 제7조)
-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. (안 제9조)

□ 검토내용

- 동 제정 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시 내수면어업 조정협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
- 내수면 어업 조정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안은 적법 타당하며
- 조문 체계에서도 목적·기능·구성·직무 등을 망라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지며 협회의 기능이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으로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공무원, 내수면 어업인 대표, 내수면 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정한 것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됨.